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규율〉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16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7
1. 법제정 필요성	7
2. 제정안의 체계 및 특징	10
3.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	12
(1) 정의	12
(2) 계약서 작성·교부	16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8
(4) 보복조치 금지	23
(5)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24
(6) 협약 체결의 권장	27

(7) 분쟁의 조정	28
(8) 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대상 제한	30
(9) 시정명령, 시정권고 및 과징금	33
(10)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	36
(11) 서면실태조사	39
(12) 손해배상책임	40
(13) 벌칙 및 과태료	45
(14) 고발	4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남근의원 등 44인

(2) 발 의 일 : 2024. 7. 5.

(3)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2)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1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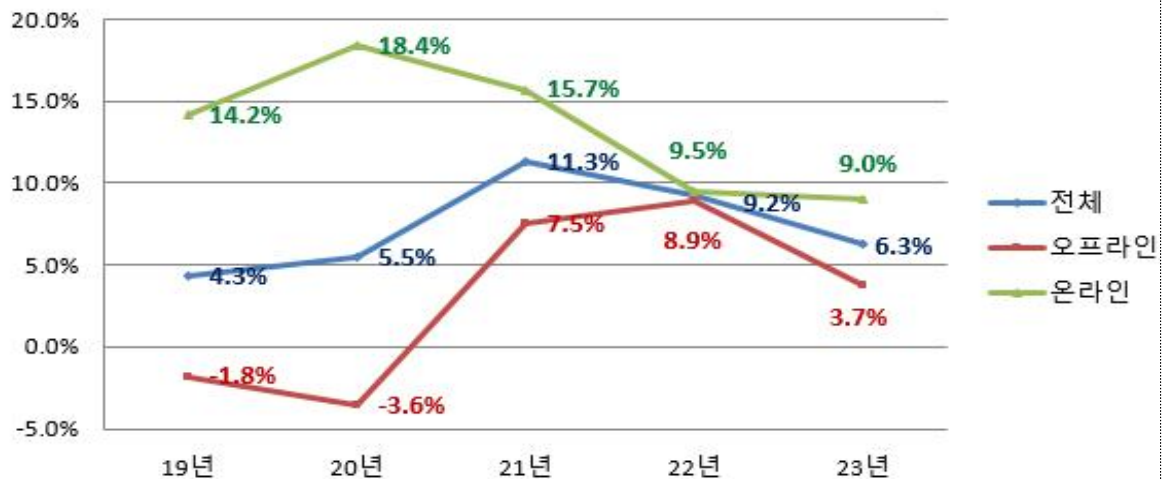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법제정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상품에 관한 정보획득 및 재화 판매·구매의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음.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가율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체 유통업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재화 구매는 일반적 소비행태가 되었음.

< '19~'23년 유통업체 연간 매출 증감률(%) 추이 >



< '22년 및 '23년 연간 매출 비중 및 매출 증감률 >

구분	'22년 연간		'23년 연간	
	매출 비중	매출 증감률	매출 비중	매출 증감률
오프라인 합계	50.8%	6.0%	49.5%	3.7%
온라인 합계	49.2%	9.5%	50.5%	9.0%
전체	100.0%	7.7%	100.0%	6.3%

* 출처 : '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24.1.30)

- 온라인 소비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결 역시 증대되었음. 정보가 산재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정돈하여 제공하고, 상품 구매 의사 전달, 상품 대금 결제 등 소비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서비스 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함.
-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과도한 수수료·광고료를 요구하거나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및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를 더욱 증대하였음.
-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실시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¹⁾되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1) 보도자료,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1.3.2.

<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규율 법 제정 필요성 >

구 분	사례수	매우 필요함 (①)	다소 필요함 (②)	다소 필요없음 (③)	전혀 필요없음 (④)	필요함 (①+②)	필요없음 (③+④)
온라인쇼핑몰	(603)	25.4	39.6	29.7	5.3	65.0	35.0
배달앱	(300)	30.7	30.7	35.7	3.0	61.3	38.7
숙박앱	(200)	42.0	32.0	23.0	3.0	74.0	26.0

*출처 :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유럽연합(EU)은 중개서비스 약관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법률」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반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²⁾’,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³⁾’ 등이 자율규제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⁴⁾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소비행태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

2) 보도자료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기획재정부, 2022.8.19.

3) 보도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4.8.13.

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

태, 해외 입법동향 및 자율규제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제정안의 체계 및 특징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총 6개 장, 4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체계 및 내용 >

구분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제11조(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제12조(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등) 제13조(협약 체결의 권장)
제3장 분쟁의 조정	제14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구분	제정안
	제16조(협의회의 회의)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조정 신청) 제19조(조정) 제20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1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	제22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3조(처분대상의 제한) 제24조(시정명령) 제25조(시정권고) 제26조(동의의결) 제27조(이행강제금) 제28조(과징금) 제2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보칙	제30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1조(서면실태조사) 제32조(손해배상책임)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고발) 제40조(과태료)

3.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

(1) 정의(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

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6.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이 결합된 서비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 또는 ㉡에 준하는 서비스, 광고·결제·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부수 서비스를 의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써, 직전 사업연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온라인 플랫폼

품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은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연평균매출액이 800억 이하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수 및 매출액 >

구분	전체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475개	127개	104개	244개
매출액*	114.4조원	87조원	17.8조원	9.6조원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2,408억원	6,850억원	1,712억원	393억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광고·중개·입점 수수료 매출액 합산

** 정보통신업자 기준,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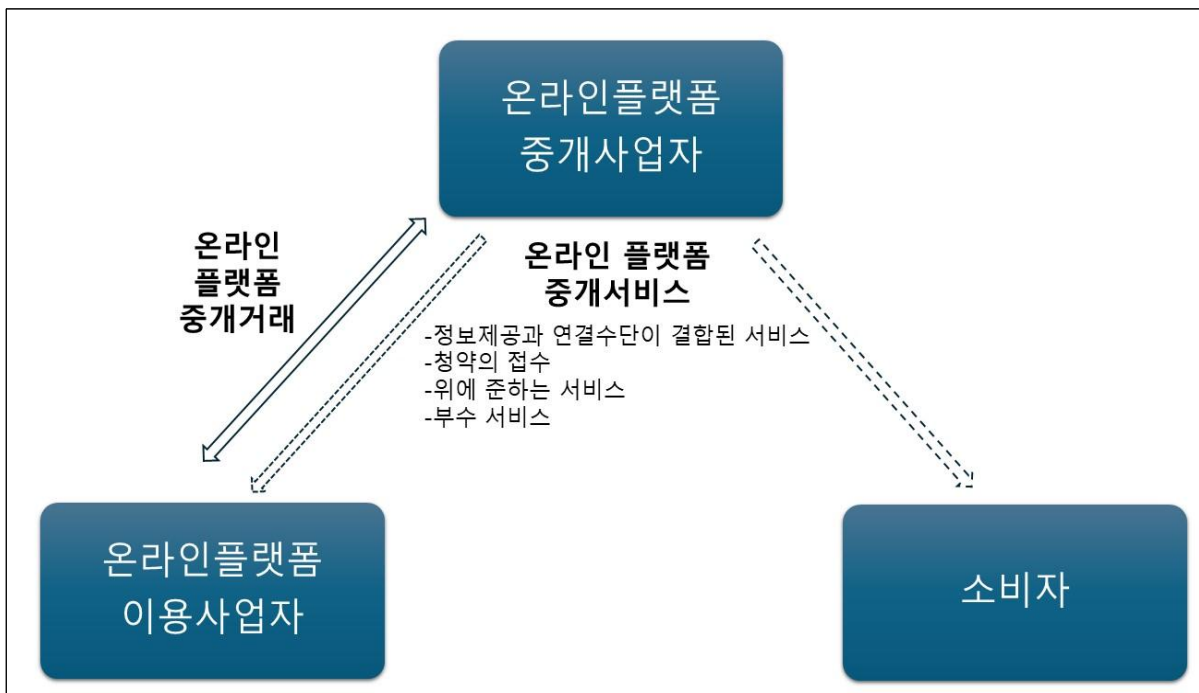
*** 정보통신업자 기준,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인 기업

※ '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다만, 제정안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자 지정을 위하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및 판매금액에 관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사전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
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
업자를 의미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
공하는 거래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로 정의함.



(2) 계약서 작성·교부(안 제6조)

- 제정안은 중개거래계약의 기간·변경·갱신·해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기간·대가, 개시·제한·중지·변경 등의 주요거래조건 및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제정안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개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거래계약의 방법·절차 및 서명·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형태 및 기준’을 이용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중개사업자가 자사의 상품을 이용사업자의 상품보다 검색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이른바 ‘자사우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등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자사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제정안 제9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도 함께 규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9조)

- 제정안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손해전가,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제정안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법률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내용 >

제정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유형)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

	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 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 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 는 행위
--	---

○ 제정안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사례를 각 거래 분야에서 살펴보면, 구입강제의 경우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⁵⁾’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거의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사례가 있음⁶⁾.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물품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정보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는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음.

○ 이익제공강요의 경우 납품업자들에게 월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한 사례가 있음.⁷⁾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월 판매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이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음.

5) 상품 매출·재고 및 매입 실적 조회 등

6) ㈜○○○○○○○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12.7.

(적용법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7)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직원 파견 강요한 ㈜△△△마트, ㈜△△△유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8.3.

○ 손해전가의 경우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가 있음.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동의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손해전가에 해당할 수 있음.

○ 불이익제공의 경우 자신이 판매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끼쳤으나 적절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⁹⁾.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귀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접속 또는 상품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적절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적용법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한 □□□□(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4.5.

(적용법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 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주)▽▽▽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5.8.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않는다면 이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경영간섭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있음.¹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도 중개거래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수수료를 차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차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
-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체 유통업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규모도 이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규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각 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정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각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0) ◇◇◇◇(주)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4.10.

(적용법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검색 배열순위 조작, 결제방식 강제, 최혜 대우 요구,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제기¹¹⁾된 바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보복조치 금지(안 제10조)

- 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 법 위반사실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중개서비스의 정지·제한 또는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제정안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3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 보복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바, 특히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

11) 의안번호 제2107622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2108626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법 위반사실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실태조사에의 협조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서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5)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안 제11조·제12조)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가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사업자단체가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중개수수료·광고비·부가서비스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1조(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이용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이용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다. 1.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라 한다)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이용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유지한 전체

이용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용사업자가 가입
나.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유지한 이용
사업자들이 가입한 이용사업자단체의 이용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이용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이용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
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등) ①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사업자”라 한다)와 중개거래계약을 체
결·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만 구성된 이용사업자단체 중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단체는 그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
의 변경, 중개수수료·광고비·부가서비스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
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중개사업자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중개사업자는 다수의 이용사업자로 구성된 이용사
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이용사업자단체는 중개사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중개서비스업자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조건에 관한 집합적 협의를 가능케 하여 공정한 거래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려는데 제정안의 취지가 있음.

○ 특히, 제정안은 등록제라는 공적절차를 통해 이용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개사업자가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여 등록사업자단체의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 또는 거래조건 외의 주제에 관한 협의 요청에 따른 중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은 이용사업자단체 등록의 수월성·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를 이용사업자단체 등록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협약 체결의 권장(안 제13조)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법령준수, 상호 지원·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고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제정안
제13조(협약 체결의 권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상호 지원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의 효율적인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협약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사업동반자로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상호의 발전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도 각 거래관계에 따른 소위 갑(甲)과 을(乙)의 상생 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있음.

(7) 분쟁의 조정(안 제14조 내지 제21조)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두도록 함.
- 분쟁조정은 정식 재판절차를 대체하는 분쟁 해결 제도로서, 분쟁조정협의회는 계약서, 약관, 불공정거래행위, 판매대금 지급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제정안이 규율하는 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 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하고,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정사항에 대해 조정에 참가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정안
제14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제16조(협의회의 회의)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조정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당사자는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과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시효가 당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19조(조정)

제20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1조(협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은 각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정함.¹²⁾

(8) 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대상 제한(안 제22조, 제23조)

- 제정안은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12) 현행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은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945호)도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제정안

제22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제정안은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안 제24조), 시정권고(안 제25조), 과징금(안 제28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당해 처분들은 법 위반행위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제정안은 행정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도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¹³⁾.

- 한편, 제정안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함. 일정한 기간 행정당국이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소멸하려는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데 처분시효의 취지가 있음.¹⁴⁾ 처분대상 제한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은 7년¹⁵⁾, 하도급법¹⁶⁾ 및 가맹사업법은 3년, 대규모유통업법은 5년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3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13)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80조 등을 준용),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4) 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15) 예외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16) 기술자료 요구 제공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9) 시정명령, 시정권고 및 과징금(안 제24조·제25조·제28조)

- 제정안은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제6조 제1항 및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9조), 보복조치 금지(제10조), 중개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 및 불이익 제공 금지(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중지,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며 법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4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 제12조제2항·제4항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재발 방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5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0조, 제12조 제2항·제4항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정안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법 위반 금액의 2배 범위에서 징벌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함. 하도급법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임.
- 한편, 제정안은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정액(10억원)의 최대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 분야에서는 법 위반 금액이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 부과금액 비교＞

구분	제정안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제45조제1항제9호)	그 외
원칙	위반금액의 2배 이내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의 4% 이내
예외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구분	하도급	가맹	
원칙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	매출액의 2% 이내	
예외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	
구분	대리점	대규모	
원칙	위반금액 ¹⁷⁾ 이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이내	
예외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	5억원 이내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10)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안 제26조·제27조)

-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¹⁸⁾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도입되어 있음.
- 제정안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동의의결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예상되는 행정제재와의 균형, 거래질서 회복 등을 기준으로 시정방안을 심사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제정안
제26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18)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5.25.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로 인해 구입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당하거나 경제상 이익(금전·물품·용역)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제공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당해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경영상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동의의결을 통해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시에 해결하려는 취지임.
- 한편, 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의의결을 이행하거나 그 동의의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동의의결 이행을 담보하고자 함.

(11) 서면실태조사(안 제31조)

-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은 각 분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함.
- 참고로, 제정안 제40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에게 1억원 이하¹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정안
제31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각 분야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관련 매출액·판매대금,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서버이용비 등 추가 부담비용, 불공정행위 경험 유형, 정책만족도 등의 자료가 수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2) 손해배상책임(안 제32조)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

업자에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제정안

제32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 다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제정안에서도 유사 행위에 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공정	◦ 부당한 공동행위 ◦ 보복조치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반품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 기술자료 유용 ◦ 보복조치
가맹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 보복조치
대리점	◦ 구입강제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 보복조치
대규모	◦ 상품대금 부당 감액 ◦ 상품의 부당 반품 ◦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 보복조치

- 한편, 제정안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당사자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²⁰⁾ 별도의 특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려는 취지임.

○ 비밀유지명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경우 그 소송에 관련된 자(다른 소송상대방, 소송대리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대하여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으로 특히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영업비밀이 제출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에 해당함.

○ 다만, 제정안은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관한 제3자의 열람신청이

20)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제3자의 열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4조를 준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해 조항은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준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기록에 대한 법원의 송부 요구(제110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기초한 상당 손해액의 인정(제115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 등 유사입법례는 모두 당해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당해 조항에 관한 준용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 도입 여부>

구분	제정안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109)	O	O	O	O	O
기록의 송부 등 (공정거래법 §110)	X	O(준용)	O(준용)	O(준용)	O(준용)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법 §111)	O	O	X	X	X
비밀유지명령 (공정거래법 §112)	O(준용)	O	X	X	X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공정거래법 §113)	O(준용)	O	X	X	X
비밀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공정거래법 §114)	X	O	X	X	X
손해액의 인정 (공정거래법 §115)	X	O(준용)	O(준용)	O(준용)	O(준용)

(13) 벌칙 및 과태료(안 제36조·제37조·제40조)

대상행위		처벌
벌칙	보복조치 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비밀엄수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감정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조사거부·방해·기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임원, 종업원, 이해관계인은 5천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없는 출석 거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임원, 종업원, 이해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
	보고 및 자료제출 거부, 허위 보고·허위자료제출	
	서면실태조사 미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방해	
	서비스 제한 등 사전통지 미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계약 서류 미보관	

- 제정안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수준과 유사함.

○ 한편, 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 발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임.

○ 가맹사업법도 제정안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 형벌 규정 없으며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벌칙 규정이 있음.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

- 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한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1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5.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③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14) 고발(안 제39조)

- 제정안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함(이른바 ‘전속고발제’).

제정안
제39조(고발) ① 제36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함.

○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거래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법집행기관으로서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때 그때의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²¹⁾

○ 한편,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에게,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은 감사원장,

21) 헌재 1995.7.21. 94헌마13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관한 고발요청권자를 확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를 개선하려는 취지임.²²⁾

- 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되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다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되므로, 이들 기관이 감사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22)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담합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